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일용 의원)

의 안 번 호	19-60
------------	-------

발의년월일 : 2019. 5. .

발의자 : 한일용,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영미, 신종갑,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용의의 정의(안 제2조)
- 나.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라. 보험가입(안 제5조)
- 마.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안 제6조)

## 3. 관계법령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9. 5. 3. ~ 5.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발전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39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